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7. 21 선고 2023가단221803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6. 23.

판 결 선 고 2023. 7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7,647,687원 및 그 중 36,801,983원에 대하여 2023. 2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.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할부금융대출, 일반대출 등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, 2021. 6. 30. C 주식회사(이하 'C'이라 한다)에게 52,000,000원을 이율 연 9.5%, 지연손해금률 연 12.5%, 대출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였고, 피고는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(이하 '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'이라 한다)하였으며, 위 대출 당시 주채무자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약정을 불이행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정하였다.

나. C은 2022. 12. 15.부터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, 2023. 2. 10.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으로 원금 36,801,983원, 이자 809,913원, 지연이자 등 35,791원의 채무가 남아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채무 합계금 37,647,687원 및 그 중 원금 36,801,983원에 대하여 위 채권계산일 다음날인 2023. 2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.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피고의 채무는 보증채무이고, 원고는 위 대출 당시 주채무자인 C의 건설기계 등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,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기에 앞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먼저 채권회수를 실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피고가 C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민법 제437조 단서는 연대보증인의 경우 일반적인 보증의 경우와 달리 '최고, 검색의 항변권'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,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바로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, 원고가 먼저 주채무자인 C에게 채권회수를 실행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양철한